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살생물물질 및 화학제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집행 기능을 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규정원 39명(8급 1명, 연구관 9명, 연구사 16명, 전문경력관 가군 3명, 전문경력관 나군 10명) 및 한시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각각 이체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일부 직위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4.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후변화정책관·녹색전환정책관 및 대기환경정책관은”을 “기후변화정책관과 녹색전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대기환경정책관은”으로,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3호”를 “제46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기후전략과·기후경제과·기후적응과·국제협력과·기후변화국제협력팀·녹색전환정책과·녹색산업혁신과·녹색기술개발과·통합허가제도과·환경교육팀·대기환경정책과·대기미래전략과·대기관리과·교통환경과”를 “기후전략과·기후경제과·기후적응과·국제협력과·기후변화국제협력팀·녹색전환정책과·녹색산업혁신과·녹색기술개발과·통합허가제도과·환경교육팀·대기환경정책과·대기미래전략과·대기관리과·교통환경과·생활환경과”로, “대기환경정책과장·대기미래전략과장·대기관리과장·교통환경과장·생활환경과장”을 “대기환경정책과장·대기미래전략과장·대기관리과장·교통환경과장·생활환경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㉔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음·진동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2. 소음·진동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3. 도로, 철도 및 항공기 등의 각종 소음측정망 설치 및 운영
4. 소음·진동, 생활소음 및 배출시설의 관리
5. 건설기계 등 소음표시제도 및 철도차량 소음권고제도의 운영
6. 소음·진동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7. 소음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음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및 운영
9.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10.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11.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설정과 관리
12.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실내공기오염원의 관리
13.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14.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측정자료의 관리 및 자동측정망 설치·운영
에 관한 사항
15. 실내 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에 관한 사항
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운영
1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계획의 수립
·시행 등 빛공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9. 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20. 실내 라돈조사, 라돈지도 작성 및 라돈 관련 컨설팅 사업추진에 관
한 사항
- 제7조제16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물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14. 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한국상하수도협회에 관한 사항
- 제9조제2항 중 “환경보건정책과·환경피해구제과·생활환경과·화학물
질정책과·화학제품관리과”를 “환경보건정책과·환경피해구제과·화학
물질정책과·화학제품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제13조제2항 중 “환경보건연구과·위해성평가연구과·화학물질연구과”
를 “환경보건연구과·환경위해성연구과”로, “환경보건연구과장·화학물
질연구과장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을 “환경보건연구과장과 가습기
살균제보건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성평가연구과장”을 각각 “환경위해성연구과장”으로 한다.
- 제13조제4항제1호 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화학물질”을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
 5.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척추동물대체시험 관련 연구
 6.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환경 중 거동(舉動)에 관한 조사·연

구

- 7. 제한·허가·금지물질 지정 관련 조사·연구
- 8. 화학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작업절차서 작성
- 9. 잔류성오염물질 등 국제적 관심 물질의 분석방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제13조제5항은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업연구원·임업연구원·보건연구원·환경연구원”을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원·임업연구원·보건연구원·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34조의3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홍수·갈수예보 관련 교육시설 운영·관리(한강홍수통제소로 한정한다)

제43조제4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표 6 수석전문관·행정전문관·공업전문관·보건전문관·환경전문관 또는 시설전문관 17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 담당) 1”을 삭제한다.

별표 7 수석전문관·행정전문관·공업전문관·보건전문관·환경전문관 또는 시설전문관 17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 담당) 1”을 삭제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99”를 각각 “360”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보건연구원 또는 환경연구원 1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원·임업연구원·보건연구원·환경연구원 또는 기상연구원 1”를 신설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임업연구원·기상연구원·보건연구원 또는 환경연구원 “2”를 “1”로 하고, 통계주사·사서주사 또는 전산주사 1 다음에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2”를 신설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5”를 “4”로 하고, 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보건연구원 또는 환경연구원 “44”를 “35”로 하며,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55”를 “39”로 하고, “기상연구사 2”를 삭제하며, “전문경력관 가군(화학물질 등록평가 담당) 3”를 삭제하고, “전문경력관 나군(화학물질 등록평가 담당) 9”를 삭제하며, 기계운영서기보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담당) 1”를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살생물물질·제품 승인 담당) 2”를 삭제한다.

별표 17의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02”를 각각 “144”로 하고, 4급 이하 “69”를 “98”로 하며, 전문경력관 “32”를 “45”로 한다.

별표 18 제2호 조직란 제2호 중 “물관리정책관”을 “수자원정책관”으로 한다.

환경부령 제51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

칙 제2조제1항 중 “2024년 8월 31일”을 “2026년 8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부령 제517호 부칙 제2조 제1항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① (생략)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후탄소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후변화정책관·녹색전환정책관 및 대기환경정책관으로 하며, <u>기후변화정책관·녹색전환정책관 및 대기환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② ----- ----- ----- ----- --- <u>기후변화정책관과 녹색전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대기환경정책관은 -----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원·임업연구원·보건연구원·환경연구원 또는 기상연구원</u>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30호부터 <u>제43호</u>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 <u>제46호</u> ----- ----- --.
⑥ 기후탄소정책실에 <u>기후전략과·기후경제과·기후적응과·국제협력과·기후변화국제협력팀·녹색전환정책과·녹색산업</u>	⑥ ----- <u>기후전략과·기후경제과·기후적응과·국제협력과·기후변화국제협력팀·녹색전환정책과·녹색산업</u>

혁신과·녹색기술개발과·통합
허가제도과·환경교육팀·대기
환경정책과·대기미래전략과·
대기관리과·교통환경과를 두
며, 기후전략과장·기후경제과
장·기후적응과장·국제협력과
장·녹색전환정책과장·녹색산
업혁신과장·녹색기술개발과장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부이사
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
관으로, 대기환경정책과장·대
기미래전략과장·대기관리과장
·교통환경과장은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기후변화국제
협력팀장 및 환경교육팀장은 과
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
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
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⑳ (생 략)

<신 설>

신과·녹색기술개발과·통합허
가제도과·환경교육팀·대기환
경정책과·대기미래전략과·대
기관리과·교통환경과·생활환
경과-----

----- 대기환경정책과장·대
기미래전략과장·대기관리과장
·교통환경과장·생활환경과장

-----.

⑦ ~ ⑳ (현행과 같음)

㉑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음·진동 개선대책의 수립
· 시행
2. 소음·진동 관련 법령의 제

정·개정 및 운영

3. 도로, 철도 및 항공기 등의
각종 소음측정망 설치 및 운
영
4. 소음·진동, 생활소음 및 배
출시설의 관리
5. 건설기계 등 소음표시제도
및 철도차량 소음권고제도의
운영
6. 소음·진동분야 환경오염공
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7. 소음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음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및 운영
9.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10.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
질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11.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
의 실내공기질 기준설정과 관
리
12.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실내
공기오염원의 관리
13.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오염

	<u>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u> 14. <u>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측정 자료의 관리 및 자동측정망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 15. <u>실내 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에 관한 사항</u> 16. 「<u>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u>」 및 관련 법령의 <u>개정·운영</u> 17. <u>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등 빛공해의 관리에 관한 사항</u> 18. <u>빛공해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u> 19. <u>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시행</u> 20. <u>실내 라돈조사, 라돈지도 작성 및 라돈 관련 컨설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	
제7조(물관리정책실) ① ~ ⑮ (생략)	제7조(물관리정책실) ① ~ ⑮ (현행과 같음)	
<16> 수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u>물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u>	
		<신 설> <신 설> ⑰·⑱ (생략) 제9조(환경보건국) ① (생략) ② <u>환경보건국에 환경보건정책과·환경피해구제과·생활환경과·화학물질정책과·화학제품관리과 및 화학안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u> ③·④ (생략) ⑤ <u>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소음·진동 개선대책의 수립·시행</u> 2. <u>소음·진동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u> 3. <u>도로, 철도 및 항공기 등의 각종 소음측정망 설치 및 운영</u> 4. <u>소음·진동, 생활소음 및 배출시설의 관리</u>
		14. <u>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u> 15. <u>한국상하수도협회에 관한 사항</u> ⑰·⑱ (현행과 같음) 제9조(환경보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u>환경보건정책과·환경피해구제과·화학물질정책과·화학제품관리과</u>----- ----- ----- -----. ③·④ (현행과 같음) <삭 제>

5. 건설기계 등 소음표시제도 및 철도차량 소음권고제도의 운영
6. 소음·진동분야 환경오염공 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7. 소음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음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및 운영
9.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10.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 질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11.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 의 실내공기질 기준설정과 관 리
12.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실내 공기오염원의 관리
13.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14.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측정 자료의 관리 및 자동측정망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실내 공기질 진단·개선 컨 설팅에 관한 사항

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관련 법령의 개 정·운영	
1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 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계획 의 수립·시행 등 빛공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9. 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20. 실내 라돈조사, 라돈지도 작 성 및 라돈 관련 컨설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① (생 략)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① (현행 과 같음)
② 환경건강연구부에 환경보건 연구과·위해성평가연구과·화 학물질연구과 및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두되, 환경보건연구 과장·화학물질연구과장 및 가 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공업 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 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위해 성평가연구과장은 과학기술서	② ----- 환경보건연 구과·환경위해성연구과----- ----- 환경보건연 구과장과 가습기살균제보건센 터장----- ----- 환경위해성 연구과장-----

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으로 보한다. ③ (생 략) ④ <u>위해성평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에 관한 사항</u> 2. <u>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 · 연구</u> 3. (생 략) 4. <u>화학물질의 신고 · 등록 및 유해성 심사에 관한 사항</u> 5. <u>유해화학물질의 지정 관련 조사 · 연구</u> 6. <u>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 련 조사 · 연구</u> 7. <u>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 · 연구</u> 8. <u>화학물질의 정보 공개 및 제 공에 관한 사항</u> 9. <u>화학물질의 척추동물대체시 험 관련 연구</u>	----- ----- -----. ③ (현행과 같음) ④ <u>환경위해성연구과장----- -----.</u> 1. <u>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u> 2. <u>환경유해인자 · 화학물질--- -----</u> 3. (현행과 같음) 4. <u>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 · 연구</u> 5. <u>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척추동물대체시험 관련 연구</u> 6. <u>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환경 중 거동(舉動)에 관한 조 사 · 연구</u> 7. <u>제한 · 허가 · 금지물질 지정 관련 조사 · 연구</u> 8. <u>화학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 시험 관련 규정의 제 · 개정 및 작업절차서 작성</u> 9. <u>잔류성오염물질 등 국제적 관심 물질의 분석방법 및 관</u>	<u>리방안에 관한 연구</u> <u><삭 제></u> ⑤ <u>화학물질연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u> 1. <u>환경오염물질의 환경 중 거 동(舉動)에 관한 조사 · 연구</u> 2. <u>새로운 미량오염물질 분석기 술 개발</u> 3. <u>화학물질 분석 방법의 연구 및 표준물질 관련 시험</u> 4. <u>화학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 시험 관련 규정의 제 · 개정 및 작업절차서 작성</u> 5. <u>잔류성오염물질 등 국제적 관심 물질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u> 6. <u>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殺生物劑)의 승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u> 7. <u>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승인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조 사 · 연구</u> 8. <u>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위해성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 · 연구</u> 9. <u>생활화학제품 · 살생물제의 시험 · 검사기관 평가 및 시험</u>
---	--	---

·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10. <u>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u>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①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u>공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u> 또는 <u>기상연구관</u> 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① ----- ----- <u>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u> ----- -----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홍수통제소) ①·② (생 략)	제34조의3(홍수통제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u>홍수·갈수예보 관련 교육시설 운영·관리(한강홍수통제소로 한정한다)</u>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3조(한시정원) ① ~ ③ (생 략)	제43조(한시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살</u>	④ -----

생물제품 승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u>국립환경과학원</u> 에 둔다.	----- ----- ----- ----- ----- <u>화</u>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환경부령 제51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환경부령 제51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u>2024년 8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 ----- ----- <u>20</u>
②·제3조 (생 략)	<u>26년 8월 31일</u> ----- ②·제3조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u>	<u><신 설></u>	<u>1</u>	+1
<u>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 담당)</u>	<u>1</u>	<u><삭 제></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u>	<u><신 설></u>	<u>1</u>	+1
<u>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 담당)</u>	<u>1</u>	<u><삭 제></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99</u>	<u>360</u>	-39
일반직 계	<u>399</u>	<u>360</u>	-39
·	·	·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공업연구관 · 임 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 구관 또는 기상연구관	<신 설>	<u>1</u>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 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 관 또는 환경연구관	<u>2</u>	<u>1</u>	-1
·	·	·	
·	·	·	
기상주사 또는 기상연구사	<신 설>	<u>2</u>	+2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u>5</u>	<u>4</u>	-1
·	·	·	
·	·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u>44</u>	<u>35</u>	-9
·	·	·	
·	·	·	
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 · 보건 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u>55</u>	<u>39</u>	-16
·	·	·	
·	·	·	
기상연구사	<u>2</u>	<삭 제>	-2
·	·	·	
전문경력관 가군(화학물질 등록평가 담당)	<u>3</u>	<삭 제>	-3
전문경력관 나군(화학물질 등록평가 담당)	<u>9</u>	<삭 제>	-9

전 문 경 력 관 나군(살생물물질·제품 승인 담당)	2	<삭 제>	-2
전문경력관 나군(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담당)	<신 설>	1	+1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의4]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02</u>	· <u>144</u>	+42
일반직 계	<u>102</u>	<u>144</u>	+42
·	·	·	
4급 이하	<u>69</u>	<u>98</u>	+29
전문경력관	<u>32</u>	<u>45</u>	+13